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검 토 보 고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94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220719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가.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안 제16조제2항 등)	2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220719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2.

다. 회 부 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안 제16조제2항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권한 및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자 하는 내용임(안 제16조제2항,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및 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략)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u>시·도지사는</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u>시·도지사는</u> ----- ----- <u>또는</u> ----- ----- ----- -----.

현행	개정안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8조-----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2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③ ----- ----- <u>시</u> <u>·도지사</u>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는 각각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택시운수종사자¹⁾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실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는 시·도지사가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여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²⁾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을 규정하면서(제1항),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부여 권한의 주체(시·도지사)와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 권한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가 「여객자동차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제도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정지(안 제16조제2항), 자격취소에 따른 청문(안 제19조), 자격취소 등의 사유가 되는 택시운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3조)의 각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시·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그 자격부여의 권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부여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안(「택시발전법」)에서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 권한의 주체를 「여객자동차법」과 합치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해 보임.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자격에 관한 권한 비교>

구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격부여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u>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취소 등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안 제19조 및 안 제23조제3항에서 청문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주체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을 전부 이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에서 보면, 청문 대상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고³⁾, 현행법 제23조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 위반행위 근거 규정인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⁴⁾ 현행법 체계 상 청문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로서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해당 규정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시·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자격취소·정지 관련 권한, 자격취소 시 청문 권한,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처분 시 청문 권한과 감독·보고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유지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